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1. 31.(화) 조간 2023. 1. 30.(월) 12:00	배포 일시	2023. 1. 30.(월)		
담당 부서 <총괄>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제도팀	책임자	팀장	이준미	(044-202-2739)
		담당자	사무관	전하윤	(044-202-2729)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28일부터 지역 공모 접수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22.7.4~'22.12.31)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되었다.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 금액은 815,000원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778건(26.6%), '암관련 질환(C*상병)'이 514건(17.6%) 이었다.

* 8차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 질병분류기호(KCD코드)

-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분위별 현황>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월소득(만원)	~150	150-192	192-214	214-249	249-289	289-340	340-415	415-524	524-715	715~	
인원(명)	282	248	194	201	182	147	171	97	38	18	1,578
계	1,107명 (70.2%)					471명 (29.8%)					(100%)

* '22.11.30 기준 상병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22.6.30 기준의 자격 및 보험료 발취

** 1분위 : 소득 하위 10%, 10분위 : 소득 상위 10%

<사업장 규모별 현황>

구분	5인 미만	5~15인 미만	15~50인 미만	50~100인미만	100인 이상	계
인원(명)	391	282	408	204	572	1,857
계	1,285명(69.2%)				(30.8%)	(100%)

* '22.12.31. 기준, 최초 신청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발취

- 이에,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 사례 >

▶ 사례1

보험설계사 C씨(51세, 창원거주)는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어 걷거나 앉을 때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유·무급 휴가 제도가 없고, 근로를 하지 않으면 수당이 없어 질병에 가장 취약한 직종 중 하나이다. 수술은 잘 되었고, 유튜브 채널 검색 도중 상병수당 제도를 알게 되어 총 25일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현재도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보험설계 업무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다.

▶ 사례2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B씨(48세, 천안 거주)는 지난 5월 편도암 수술을 받고, 25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무급휴가만 있어 생계비가 걱정되었다. 무급휴직 기간인 7월~8월에 상병수당을 신청하였고, 약 2달간의 상병수당을 통해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는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다.

*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공모 통해 선정, 전액 국비 지원('23년 예산 204억 3,300만원)

○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 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자격〉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①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②15세 이상 65세 미만의 ③대한민국 국적자이다.

○ 취업자 기준은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자영업자*이다.

*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인 자

** 최저임금 9,620원('23년)에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금액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②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 시 미취업자를 다수 포함하게 되므로,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20%'로 설정

〈대기기간 및 최대보장기간〉

□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하였다.

*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를 의미함

-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하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최소 3일 이상 설계하는 것을 권고

-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하였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으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 예> 직장인, 대상포진 →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에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비교>

	1단계 ('22.7~)			2단계 ('23.7~)	
모형	근로활동불가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2)	의료이용일수 (모형3)	근로활동불가 (모형4)	의료이용일수 (모형5)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급여수준>

□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 (근로활동불가모형)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의료이용일수모형)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신청 및 지급 절차>

□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



-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공모절차〉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8일(수)부터 2월 23일(목)까지이다.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작년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라며,
-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 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 또한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운영되므로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총괄>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제도팀	책임자	팀장	이준미	(044-202-2739)
		담당자	사무관	전하윤	(044-202-2729)
담당 부서 (지역공모)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운영팀	책임자	팀장	이성민	(044-202-2725)
		담당자	사무관	김남효	(044-202-2724)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	책임자	부장	양순원	(033-736-4261)
		담당자	팀장	두순진	(033-736-4262)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사업운영부	책임자	부장	송은주	(033-736-4251)
		담당자	팀장	우선화	(033-736-4255)

붙임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개요

1 개요

-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2단계 시범사업 추가 시행('23.7~'25.6)

2 세부내용

- (대상자)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
 - (취업자) 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②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③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및 매출증빙(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 (소득·재산기준) ①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3년)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2,702,000원	96,150원 이하	28,896원 이하	97,102원 이하
2인	4,148,000원	147,280원 이하	105,944원 이하	148,789원 이하
3인	5,322,000원	189,109원 이하	147,855원 이하	191,845원 이하
4인	6,482,000원	230,142원 이하	196,236원 이하	233,952원 이하
5인	7,597,000원	272,226원 이하	249,281원 이하	278,492원 이하
6인	8,674,000원	309,670원 이하	293,801원 이하	320,126원 이하
7인	9,730,000원	346,067원 이하	335,569원 이하	359,887원 이하
8인	10,785,000원	403,785원 이하	402,840원 이하	434,962원 이하

※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1% 이하인 경우 보험료 산출이 어려워, 기준중위소득 130% 기준 적용

- (모형) 급여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2개 모형 운영

- ①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②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구분	근로활동불가 모형	의료이용일수 모형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지역 개수	2개	2개

-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지급금액)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 60%)